

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(제20조제2항 관련)

1.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

- 가. 점용목적물은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원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- 나.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제외한 점용시설물은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공원시설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점용행위는 용산공원의 경관, 공원시설의 보전 및 공원의 이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점용행위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바.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사. 용산공원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아.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용산공원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자.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.

2. 점용허가의 세부기준

- 가. 전봇대, 전선,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
 - 1)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할 것
 - 2)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
 - 3) 전기통신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,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1.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
- 나.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
 - 1)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 및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,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1.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. 다만, 중량

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

2) 가스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

다. 도로 및 철도의 설치 : 도로 및 철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,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.0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

라.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: 존속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

마. 경기·집회·전시회·박람회·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

1) 존속기간은 1년 이내일 것

2) 허가목적이 문화·예술·교육·과학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